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107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1
2020-108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7
2020-109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래전략과)	11
2020-110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15
2020-111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산림과)	19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07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권재경, 이흥희, 김종두,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재운,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제13조)
- 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바. 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2. 경상남도의원 1명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08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권재경,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재운, 김종두 의원

1.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거창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30조, 제30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거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거창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09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홍희, 이재운,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김종두,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지원 여성기업 용어 정의 및 지원 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제3조)
-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 대상인 여성기업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사업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제4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 110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권재경, 이홍희, 김종두,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이재운,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나. 수리비 지원범위 구체화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13. ~ 10.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이내로”를“에서”로 “내구연한 경과자”를“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u>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u>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u>이내</u>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u>내구연한 경과자</u>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 <u><신 설></u>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u>「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u>에서</u>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u>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u>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 ④ <u>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u>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6조(지원대상)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지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 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군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소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3. 관련의견 :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황

(2019년 기준, 단위:명)

구분	배터리 교체	타이어 교체	합계
계	40	25	65
기초 및 차상위장애인	7	3	10
일반 장애인	33	22	55

※ 관내 의료기 상사(동양의료기, 이원의료기)를 통한 이용 자료 조사

2. 비용추계 : 65명 × 300천원 = 1,950천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10명 × 300천원 = 3,000천원
- 일반장애인 : 55명 × 300천원 = 16,500천원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0- 111
----------	-----------

발의일자	2020. 10. 20.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이재운,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김향란, 심재수, 김종두 의원

1. 제안이유

-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산림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함(안 제3조)
- 다.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임업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불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이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 나. 체험행사
 -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 관련조문 :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 비용(a - b)		630	700	700	700	700	3,430
세출	국비	1,625	1,700	1,700	1,700	1,700	8,425
	도비	165	200	200	200	200	965
	군비	630	700	700	700	700	3,430
	소계(a)	2,420	2,600	2,600	2,600	2,600	12,820
세입	국비	1,625	1,700	1,700	1,700	1,700	8,425
	도비	165	200	200	200	200	965
	소계(b)	1,790	1,900	1,900	1,900	1,900	9,390

3. 관련 의견

-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1년 기준)

-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 2,165백만원
- 산양삼, 두릅, 고로쇠 등 산림소득 지원사업 : 172백만원
- 임업 관련 연찬회, 교육, 행사 지원 : 83백만원